

현역병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

(영 제129조제7항 및 훈령 제23조 관련)

연 기 사 유	연 기 기 간	첨부·확인서류	
		신청인 제출	담당자 확인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1호)	가. 90일의 범위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 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나.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최초 신체검사일정까지 연기 다.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통틀어 2회, 1년의 범위내)	병무용진단서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 -
2.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 정리가 어려운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2호)	30일의 범위에서 연기하되 사유가 계속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통틀어 60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3호)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 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4호)	행방불명 사유 해소 시까지 연기	-	주민등록등(초)본
5.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자 30일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만 해당한다. (영 제129조제1항제5호)	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 모집계획에 따른 선발결과 발표 시까지 연기(장교, 부사관 등으로 선발된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다시 연기) 다만, 한 차례만 연기하되 1차와 2차(체력검사·면접 등)를 구분하여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나. 각 군에 지원하여 최종 선발되었거나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한 차례만 연기(군 지원 사유로 한 차례 입영일자 연기를 받은 사람을 포함)	접수증 또는 수험표 (장교, 부사관)	각군 지원사항 (일반 모집병)

연 기 사 유	연 기 기 간	첨부·확인서류	
		신청인 제출	담당자 확인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영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입영 등이 연기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외체재 중인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6호)	가.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되 그 연기 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 다만, 그 연기로 인하여 30세가 초과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세까지 연기 나.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다만, 해당 사유 연기 후 다음 입영일자 5일전까지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다.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 포함)하여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1 제1호 가목 3)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제한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을 변경 하기 곤란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기(다만,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여권발급 정보
7.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7호)	가. 대학진학(중고등학교 진학·복학예정인 사람 포함)예정인 사람은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 추가로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대학수학 능력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 (22세에 최초 연기 신청한 사람 포함) 나. 대학원진학 예정인 사람(박사과정 수학예정인 사람 포함)은 대학(원)을 졸업(예정)하는 다음 해 5월 말일(후기에 졸업(예정)한 사람 중 다음 연도 후기 진학예정인 사람은 다음해 10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다. 대학편입학 예정인 사람은 대학수료 또는 졸업(예정)하는 다음해 5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수학능력 시험 접수증 등	-

연 기 사 유	연 기 기 간	첨부·확인서류	
		신청인 제출	담당자 확인
8.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8호)	가. 친권자가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연기 다만 병역의무자가 미혼인 경우에는 자녀 또는 자녀의 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 연기 (28세 이상인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 민 등 록 등 (초)본
	나.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소집,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그중 연기를 희망하는 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복무중인 형제의 전역 시까지 연기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 연기)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병역사항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공공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채용, 자격·면허시험(「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민간자격 포함) 및 검정고시에 응시(예정인 사람 포함)하는 사람은 그 시험 일정까지 연기 1) 각종 시험의 연기 횟수 가) 채용시험 : 3회(2회 이상 연기 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나) 자격·면허시험 : 1회 다만,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은 연기 제한 (28세 이상인 사람은 국가 공인 민간 자격시험 연기 제한) ※ 상시 시험을 시행하는 동일 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제한 다) 시험 주기가 연 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동일시험에 한정하여 2회까지 연기하되(2회 연기 시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입영일 이전에 접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일정까지 연기 후 접수여부 확인, 추가연기	시험 접수증 (수험표)	시험응시 여부 또는 1차시험 합격 여부 (필요시 신청인이 증빙자료 제출)

연 기 사 유	연 기 기 간	첨부·확인서류	
		신청인 제출	담당자 확인
	라) 1차와 2차 시험이 구분되는 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이 경우 1차 시험 합격한 사람으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해 2차 시험 접수 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시험 일정까지 연기 2) “다”목에 따른 채용 및 자격·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후보등록 또는 연수수련 중(예정)인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 3) 검정고시에 접수한 사람은 시험일정 까지 연기하되, 2회 이상 연기 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라. 의사(치과의사 포함), 한의사, 수의사, 약사(한약사 포함) 면허시험, 유치원·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관련 대학 (원) 졸업 등 해당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후 시험응시 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기(2회 이상 연기 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지정(허가) 직업훈련기관(법인)에서 교육비, 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 중인 사람으로 매일(주말제외)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한 차례만 졸업(수료) 시 까지 연기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바. 학점은행, 졸업예정 사유로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1) 학력이 학사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점 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 과목을 출석수업형태(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된 경우 및 학기 중 출석수업이 1회 이상 필수인 원격수업 포함)로 수강중인 사람은 한 차례만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재 직 증 명 서 등 증빙자료 시험접수증 (수험표) 시험접수증 등 증빙자료 재학(원) 확인 자료 재학증명서, 수강신청 확인서 등	- - - - -

연 기 사 유	연 기 기 간	첨부·확인서류	
		신청인 제출	담당자 확인
	2)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의 1년 이내 졸업예정인 사람(수료 포함)으로서 학업 계속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 초과 1년의 범위(대학 2년제 과정 23세, 3년제 과정 24세, 4년제 과정 25세, 5년제 과정 26세, 6년제 과정 27세, 의과 약학 대학 28세, 석사학위 2년제 과정 27세, 2년제 초과 과정 28세, 의과약학 대학원 29세, 박사학위 과정 29세, 연수기관은 27세)에서 졸업 시까지 연기 (휴학한 사람은 연기 제한)	재학(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 (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재직증명서 (업체 서식)	-
	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창업한 사람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 하여 연기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
	1) 벤처기업 창업가,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사람	벤처기업확인서,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창업 지원사업 선정 사실확인서	-
	2) 사회적기업창업가(대표자), 예비사회적 기업 창업가(대표자), 정부부처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한 사람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 기업육성 사업 협약서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최 주관 “창업경진대회 (소셜벤처·사회적 기업 경연대회 포함)” 포상 순위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경진대회 입상 증명서	-
	4) 훈격이 대통령상 이상인 창업경진대회 에서 본선에 진출한 사람	경진대회 본선 진출 사실확인서	-
	5)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한 사람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
	6)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	벤처캐피탈 투자 사실확인서	-

연 기 사 유	연 기 기 간	첨부·확인서류	
		신청인 제출	담당자 확인
	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되, 연기 사유가 계속되는 등 필요할 경우 동일 사유에 한하여 3개월 범위에서 1회 추가 연기(통틀어 2회, 6개월 범위).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으로 지역 또는 기관의 홍보 대사 등 홍보활동의 경우 연기 제한	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